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제2022-128호 2022년 12월 30일(금)	시 여수시 보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2-59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2-594호	지방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	2
○ 여수시 고시	제2022-595호	소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	6
○ 여수시 고시	제2022-596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서(만흥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8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2-3432호	여수형어린이집 선정 결과 공고	9
○ 여수시 공고	제2022-3468호	2020년도 율촌 가장·화양 이천·소호 항호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에 대한 공시송달	10
○ 여수시 공고	제2022-3469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22-3473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12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815호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여수시 조례	제1816호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여수시 조례	제1817호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여수시 조례	제1818호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 여수시 조례	제1819호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 여수시 조례	제1820호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조례	42
○ 여수시 조례	제1821호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 여수시 조례	제1822호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51
○ 여수시 조례	제1823호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55
○ 여수시 조례	제1824호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58
○ 여수시 조례	제1825호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1
○ 여수시 조례	제1826호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 여수시 조례	제1827호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 여수시 조례	제1828호	여수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71
○ 여수시 조례	제1829호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 여수시 조례	제1830호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77
○ 여수시 조례	제1831호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80
○ 여수시 조례	제1832호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87
○ 여수시 조례	제1833호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91
○ 여수시 조례	제1834호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96
○ 여수시 조례	제1835호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03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836호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09
○ 여수시 조례	제1837호	여수시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 조례	114
○ 여수시 조례	제1838호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1
○ 여수시 규칙	제805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25
○ 여수시 규칙	제806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6
○ 여수시 규칙	제807호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208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2 - 59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 인 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2-71 ('22. 12. 29.)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84-6번지 일원	202.5	하수 방류관로 설치 및 상부 평탄화	2022. 12. 29. ~ 2037. 12. 28.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하수도과)	

2022. 12. 29.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2-594호

지방하천 점용허가(변경)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여 수 시 장

□ 허가내용

<table>
<tr><td colspan="2">허가번호</td><td rowspan="8">다음 허가내역 참조</td></tr>
<tr><td colspan="2">하천의 명칭</td></tr>
<tr><td rowspan="2">점용자</td><td>주 소</td></tr>
<tr><td>성 명</td></tr>
<tr><td rowspan="2">점용지역</td><td>위 치</td></tr>
<tr><td>면 적</td></tr>
<tr><td colspan="2">점용목적</td></tr>
<tr><td colspan="2">점용기간</td></tr>
</table>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1	2022-16	소라천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2로 203-**	㈜미*	소라면 봉두리 787-5, 788-2	49	사무실 진출입로 개설 및 보강토 옹벽 설치	2022.12.16. ~ 2027.12.31.	당초
					소라면 봉두리 787-5, 788-2	187	사무실 진출입로 개설 및 보강토 옹벽 설치	2022.12.16. ~ 2027.12.31.	면적 변경
2	2007-2	소라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	G**텍스㈜	소라면 봉두리 1384	118.06	LNG 배관 매설	2007. 2. 1. ~ 2022.12.31.	당초
					소라면 봉두리 1384	118.06	LNG 배관 매설	2007. 2. 1. ~ 2027.12.31.	기간 연장
3	2007-3	소라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	G**텍스㈜	소라면 봉두리 1384	16.38	LNG 배관 매설	2007. 2. 1. ~ 2022.12.31.	당초
					소라면 봉두리 1384	16.38	LNG 배관 매설	2007. 2. 1. ~ 2027.12.31.	기간 연장
4	2007-4	쌍봉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	G**텍스㈜	소라면 덕양리 1427 외 3필지	106.07	LNG 배관 매설	2007. 2. 6. ~ 2022.12.31.	당초
					소라면 덕양리 1427 외 3필지	106.07	LNG 배관 매설	2007. 2. 6. ~ 2027.12.31.	기간 연장
5	2007-5	율촌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	G**텍스㈜	율촌면 월산리 1425-2	29.03	LNG 배관 매설	2007. 3. 9. ~ 2022.12.31.	당초
					율촌면 월산리 1425-2	29.03	LNG 배관 매설	2007. 3. 9. ~ 2027.12.31.	기간 연장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6	2007-6	율촌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	G**텍스㈜	율촌면 조화리 911 외 1필지	183.25	LNG 배관 매설	2007. 3.27. ~ 2022.12.31.	당초
					율촌면 조화리 911 외 1필지	183.25	LNG 배관 매설	2007. 3.27. ~ 2027.12.31.	기간 연장
7	2007-7	남수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	G**텍스㈜	화치동 16-29	55.4	LNG 배관 매설	2007. 5.22. ~ 2022.12.31.	당초
					화치동 16-29	55.4	LNG 배관 매설	2007. 5.22. ~ 2027.12.31.	기간 연장
8	2007-8	중흥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	G**텍스㈜	중흥동 750-3	104.6	파이프랙 및 LNG배관 설치	2007. 8.13. ~ 2022.12.31.	당초
					중흥동 750-3	104.6	파이프랙 및 LNG배관 설치	2007. 8.13. ~ 2027.12.31.	기간 연장
9	2007-10	중흥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	G**텍스㈜	화치동22-2	35.49	LNG 배관 매설	2007. 2. 1. ~ 2022.12.31.	당초
					화치동22-2	35.49	LNG 배관 매설	2007. 2. 1. ~ 2027.12.31.	기간 연장
10	2007-11	율촌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	G**텍스㈜	율촌면 조화리 911 외 1필지	178.22	LNG 배관 매설	2007. 2.15. ~ 2022.12.31.	당초
					율촌면 조화리 911 외 1필지	178.22	LNG 배관 매설	2007. 2.15. ~ 2027.12.31.	기간 연장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11	2007-13	쌍봉천	여수시 여수산단로 91*	G**텍스㈜	소라면 덕양리 1428 외 1필지	75.31	LNG 배관 매설	2007. 1.10. ~ 2022.12.31.	당초
					소라면 덕양리 1428 외 1필지	75.31	LNG 배관 매설	2007. 1.10. ~ 2027.12.31.	기간 연장
12	2022-17	남수천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산단환경관리사업소)	화치동 1371	5	수질측정기 설치	2022.12.22. ~ 2027.12.31.	
13	2022-18	중흥천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중흥동 1687	5	수질측정기 설치	2022.12.22. ~ 2027.12.31.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22-595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여 수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다음 허가내역 참조		
	대표자 (성 명)		주소	
소하천명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면적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목적 및 사유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1	2022-20	신기천	여수시 덕충2길 9-**	박*혜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975번지 외 2필지	249	진출입 교량 설치 및 콘크리트 포장	2022.12.20. ~ 2027.12.31.	
2	2022-21	중방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	㈜엘*화학	여수시 화치동 257번지	3	폐수용 배관 신설	2022.12.21. ~ 2027.12.31.	

여수시 고시 제2022 - 596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여수시 만덕동 1441-1외 34필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9.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만덕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전라남도 소호로 237 (주)홍익홀딩스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만덕동 1441-1 외 34필지
4. 사업개요
   가. 사업면적 : 52,984㎡
   나. 건축면적 : 9,144.852㎡
   다. 연 면 적 : 47,958.7534㎡
   라. 규 모 : 지하3층・지상4층, 주13동, 299세대
5. 사업기간 : 2023. 6. 1. ~ 2025. 7. 1.
6.「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가.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다. 「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라.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121)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2-3432호

2023년 여수형어린이집 신규선정 결과 공고

2023년 여수형어린이집 신규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 형	어린이집명	대표자	사업기간	비고
계	5개소			
재 선 정	EQIQ어린이집	박 ○ 정	‘23년 1월 2일 ~ 12월 29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시 1회에 한해 재선정 ※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
재 선 정	사랑가득어린이집	추 ○ 임		
신규선정	시전사임당어린이집	이 ○ 령		
신규선정	통키어린이집	지 ○ 숙		
신규선정	초코어린이집	최 ○ 숙		

2022년 12월 30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 2022-34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율촌 가장·화양 이천·소호 항호지구 조정금 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4명(가장지구 7, 이천지구 5, 항호지구 2)
2. 공고기간: 2022. 12. 30. ~ 2023. 1. 13.(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율촌면사무소·화양면사무소·쌍봉동사무소게시판
4. 기타사항: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659-3332, 3474, 347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 12. 30.

여 수 시 장(인)

여수시 공고 제2022-3469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대도시스템 (박상순)	전남 여수시 삼동2길 18(주삼동)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여수2020-06-10)	206211-0******	2022.12.29.	수주불가

2. 공고 기간: 2022. 12. 29. ~ 2023. 1. 12.(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2-3473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 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홍익이앤지 (임대철)	전남 여수시 상암로 169-2, 2층(호명동)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여수-22-사-09)	700519-1******	2022.12.29.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2022. 12. 29. ~ 2023. 1. 12.(14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석 인

여수시 조례 제1815호

붙임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15호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새마을지도자여수시협의회, 여수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여수시지부”를 “새마을지도자여수시협의회, 여수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여수시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여수시협의회”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여수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여수시협의회, 여수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여수시지부를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①----------새마을문고여수시지부,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여수시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 · 면 · 동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1816호

붙임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체육회 및 여수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2(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체육회 및 여수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1817호

붙임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차목”을 “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2호부터 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행정위원회

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문화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환경복지위원회

가. 교육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사항

4.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가. 수산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시설관리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차목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업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② ---------- 제3호라목----------.
1. 의회운영위원회	1. ----------
가.~ 나. (생 략)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과 그 밖에 의회 관련 각종 의안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2. ----------
가. 시민공감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시민소통담당관 ----------
나. 공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예산담당관 ----------
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홍보담당관 ----------
라. <신 설>	라.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신 설>	마. 행정안전국 ----------
바.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문화산업국 ----------
사.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농업기술센터 ----------
아.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중부민원출장소 ----------

자.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3. 환경복지위원회	3. ----------
가. 환경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교육복지국 ----------
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환경녹지국 ----------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
라. <신 설>	라.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자.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삭 제>
차. 생활자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삭 제>
카.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삭 제>
4. 해양도시건설위원회	4. ----------
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수산관광국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신 설>	다. 상하수도사업단 ----------
라. <신 설>	라. 시설관리사업단 ----------
마.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인

·여수시 조례 제1818호

붙임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18호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19년은 월 1,926,280원 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0.1%를 감한 인상률" 을 "**2023년은 월 2,251,0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9년은 월 1,926,280원 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0.1%를 감한 인상률을 적용한다. ② (생 략)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2023년은 월 2,251,080원 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② (현행과 같음)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동 (인)

여수시 조례 제1819호

붙임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수시 또는 여수시의 산하기관에 의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수시 또는 여수시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여수시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여수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 윤리법」 에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여수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8조를 삭제한다.

제42조 중 “의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 중 별지 제3호, 제5~8호, 1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나. (생 략) <신 설> 2. (생 략) 3. “특수관계사업자”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	제2조(정의)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현행과 같음) <삭 제>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같은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과 제6조에 따른 겸직신고 현황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여수시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삭 제>	

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⑤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여수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	<삭 제>	

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자

다.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자

② 의원이 직무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ㆍ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	<삭 제>

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개시 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	<삭 제>

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여수시 및 여수시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② (생 략) <신 설>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 전가(轉嫁)----------
3. 여수시 또는 여수시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

<신 설>	------- 가. 여수시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여수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 윤리법」에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여수시가 고나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여수시 또는 여수시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28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	<삭 제>

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 · 경매 · 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42조(간사) ---------- ---------- **총무팀장**--------.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인)

여수시 조례 제1820호

붙임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常)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0호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공장 등을 설립·등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 권고 사항 마련과 포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시에 공장을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시 소재 투자기업 또는 공장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지역”이란 시 관내로 한정한다.
4. “지역거주”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시 소재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이란 도시성장을 위해 시와 실천협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에 기여한 우수 투자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2장 투자기업 또는 공장에 대한 지역기여 권고

제3조(지역기여 권고 시책 추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지역기여 권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투자기업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 주사무소 등 설립 유도
2.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3. 투자기업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지역거주를 위한 관사·숙소·주택 등 지원

사항 마련 및 추진

② 시장은 도시동반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홍보
2.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연구개발, 마케팅, 홍보 및 생산품의 판로개척 등 지원
3.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신·증설 등을 위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 지원
4. 도시동반성장 기여 우수기업 생산품 지역주민 우선 이용 홍보 등

③ 시장은 도시동반성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동반성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투자기업의 지역 동반성장 노력) 시장은 제조업의 균형있는 발전, 도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투자기업이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지역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행노력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2. 시외(市外) 지역 출·퇴근 버스 운영 중단 등
3.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소재 중소건설업체 우선 선정 및 일정비율 이상 공사발주
5. 지역 농축수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6. 지역의 문화, 관광, 휴양 등 연수·교육시설 투자
7. 그 밖의 지역기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실천협약 및 이행사항 점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대하여 투자기업과 매년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권위적이고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상호 평등원칙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권 보호) 시장은 이행 협약체결 및 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제8조(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통한 도시동반성장을 위해 도시동반성장 발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기업의 지역기여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책 실천기준 및 방법 등 도시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3. 투자기업 임직원의 지역거주 등을 위한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 대상(大賞)」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동반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3. 지역기여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임·직원
4. 여수 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장
5.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제16조(포상시기) 시장은 지역기여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시기는 매년 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방법 등) ① 포상은 표창장으로 하며, 표창장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포상금 등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에 대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 1개 기업 이내, 포상금 5천만 원 이내
2.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우수상 : 2개 기업 이내, 포상금 3천만 원 이내
3.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장려상 : 3개 기업 이내, 포상금 1천만 원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 기업 당 6천만 원 이내
2. 이사비용 또는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 기업 당 5천 5백만 원 이내
3.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또는 지역교육비 : 기업 당 1억 원 이내
4. 이주 직원 지역 체육·문화 활동비 또는 교통비 : 기업 당 3천 6백만 원 이내
5.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 : 기업 당 3천만 원 이내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기여 투자기업 포상관련 평가기준은 별표 1, 2와 같으며, 별표 3의 가점은 기업에 유리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은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하여 실거주 중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당되며, 제5호의 지원대상은 시에서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투자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⑥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직원 1명당 지급금액은 별표 4과 같다.

⑦ 제3항에 따른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大賞) 수상 기업 임·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율은 별표 5와 같다.

⑧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여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수상에 따른 예우 등) 표창장을 수여받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산단 내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기업의 기업명을 법정동명에 추가한 법정동명 변경
2. 산단 내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투자기업의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또는 변경
3.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최우수상 수상 기업명 본청 현관 게시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임직원 초청
5. 그 밖에 투자기업의 사기진작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포상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임・직원에게 포상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은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평가표(별표1)의 평가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이 제19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시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상 및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그 밖에 포상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동 인

여수시 조례 제1821호

붙임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1호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아동 또는 정신장애인”을 “아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또는 정신장애인	3. ---------- - 아동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동 인

여수시 조례 제1822호

붙임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2호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여수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스마트 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동 인

여수시 조례 제1823호

붙임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3호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기본법」 및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설치·조성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법·제도 개선
5. 재원 조달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수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및 교육
2. 창작공간 설치
3. 창작물의 공연·전시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 시장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인)

여수시 조례 제1824호

붙임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4호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교육환경 개선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생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인)

여수시 조례 제1825호

붙임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5호

여수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식음료품 지원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인

여수시 조례 제1826호

붙임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6호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센터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된다.	제9조(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4. 피성년후견인----------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센터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인)

여수시 조례 제1827호

붙임 여수시 도서지역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7호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목욕업소”를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한다.
제7조 중 “목욕업소와 목욕권”을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목욕권 및 이·미용권”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목욕권 사용)”을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
단, 목욕업소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미용업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욕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목욕업소”를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목욕권”을 “목욕권 및 이·미용권”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
제3조(지원 대상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 략) 3. 목욕 등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업소의 무료 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제7조(협약 체결) 시장은 시 목욕업소와 목욕권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협약 체결) -------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와 목욕권 및 이·미용권 ----
제8조(목욕권 사용)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 제5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시 목욕업소 중 제7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목욕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명시한다. 단, 목욕업소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이·미용업소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욕권

현 행	개 정 안
	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요금 정산) ①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에 대한 요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목욕업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목욕비 청구서에 지원 대상자가 사용한 목욕권(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것을 말한다)과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9조(요금 정산) ① -----------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조치 등) ----------.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 ----------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인)

·여수시 조례 제1828호

붙임 여수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8호

여수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여수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보호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인)

·여수시 조례 제1829호

붙임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29호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종사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비
9.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종사자 교육비 5. ~ 7. (생 략) <u><신 설></u>	제7조(사업비의 지원) ----------. 1. ~ 3. (현행과 같음) 4. 종사자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7. (현행과 같음) 8.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비 9.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동 인

여수시 조례 제1830호

붙임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30호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1831호

붙임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31호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주민 등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할 것
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여수시(이하"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전라남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의해 수립된 집행계획을 여수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한 국가 및 전라남도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③ 그 밖에 우선구매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대상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새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새활용센터(이하“새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변경
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제18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과장 및 제10조에 따른 새활용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시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재활용·새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동 인

여수시 조례 제1832호

붙임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32호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보상금
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 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1833호

붙임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33호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 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여수시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1834호

붙임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34호

여수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이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경우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주차 공간 제공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종교시설”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한다.
5. “개방주차장”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6. “입주자등”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요건) ①「주차장법 시행령」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을 말한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주차장법」제19조제13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시설물의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주간 또는 야간에 2년 이상 개방
3.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5일 이상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필요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 다만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당시 적용했던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협약기간 내 1회에 한한다.

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방주차장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5. 관리주체 부담액, 다만 부담액은 10%이상이어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지 적합성,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 신청·정산 등) 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

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3.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내지 제4항의 강제 처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차량 훼손 및 물품도난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③ 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단, 보증보험가입은 여수시 공영주차장에 준하여 보증보험료를 여수시에서 지원한다.

제11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3.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
4.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주차 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개방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은 시에서 설치한다.

②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 표지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 정한 사항

제13조(협약 체결) ① 시장은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와 개방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 한다.

② 개방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한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는 당해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14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 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인

여수시 조례 제1835호

붙임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35호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농촌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농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3. 사회적 농업 정책개발 및 홍보방안
4. 사회적 농업 연구개발 및 추진방안

5. 사회적 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기술·법률·세무·회계 등 전문분야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 지정과 취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 관련 연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3. 사회적 농업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 농업 당면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 농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사회적 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보조금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동 (인)

여수시 조례 제1836호

붙임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36호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치유농업”이란「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치유농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간 협력 기관(보건·복지·교육·재활·심리·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문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

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

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현 (인)

여수시 조례 제1837호

붙임 여수시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37호

여수시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내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생산자조직”이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지역농협과 법인등록기관의 등록을 필한 조직을 말한다.

제2장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2. 최저가격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업무과장으로 한다.

1. 지원대상 농가 및 생산자조직(이하“농가 등”이라 한다) 대표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2명
3. 여수시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NH농협은행 여수시지부장
5. 여수시 지역농업협동조합장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 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유통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최저가격 지원

제8조(지원대상) ①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시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농업인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농협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

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은 선정된 지원대상 농산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영농은 제외한다.

②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가 등은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시에 실제로 거주하며, 품목마다 1,000제곱미터 이상(시설재배 농산물은 품목당 33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 재배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통 출하한 농가 등으로 한다.

③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 실 경작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원을 부담한 지역농협의 장은 농가 등을 대표하여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한 차액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만 공영도매시장 출하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정산)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농협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농협의 장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대상 농가 등에 정산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지원방법

제11조(생산비 · 최저가격 결정)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율을 참고하고, 최저가격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과 전국 도매시장의 농산물가격의 1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가 없는 품목은 농가 등

및 지역농협과의 품목별 계약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한다.

제12조(최저가격 고시) 시장은 최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시 인터넷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게재해야 한다.

제13조(차액 지급기준) 차액지급 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제14조(재원 마련 등) ① 시장은 최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시: 90퍼센트
2. 지역농협: 10퍼센트

제15조(재원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16조(환수) ① 시장은 농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인

여수시 조례 제1838호

붙임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838호

여수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 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 계획서 및 안전 교육의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여수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시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영 인

여수시 규칙 제805호

붙임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05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ㆍ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장을, 기획예산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관ㆍ과장은 국ㆍ소ㆍ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시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3조(시민소통담당관) 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소통 정책 수립 및 관련 시책 총괄
2.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운영
3.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
4. 시민의 소리 운영 관리
5. 온라인 플랫폼 시민소통광장 제안이행 토론회 개최
6. 직소민원 관련 시책 총괄
7. 직소민원 접수·상담 및 처리부서 분류 처리

8. 직소민원 처리현황 데이터 관리
9. 직소민원 현장점검 및 민원관련 업무조정
10. 여수시장과의 대화 운영
11.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고충·특별민원) 추진
12. 시민옴부즈만 업무 지원
13.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및 협의회 운영관리
14.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15.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관리

제4조(기획예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운영
2. 주요사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운영
3. 시장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4. 시정조정위원회 및 간부회의 운영
5. 중장기 계획수립 및 지역현안사업 관리
6. 시책연구모임 운영
7. 시정현황 및 상황실, 행정자료실 운영관리
8. 여수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사항
9.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
1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시행
11.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12.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13. 정부혁신 추진과제 발굴 및 관리 운영
14.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
15. 여수만 르네상스 정책사업 총괄 관리
16.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종합관리
17.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
18. 재정운영 및 지도 감독
19. 기채 승인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총괄관리
20. 기금운용 총괄관리

21.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관리
22. 경영수익사업 심사분석 관리
23. 공모사업 총괄 관리 및 지원
24. 시정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5. 제안제도 및 견문보고제도 운영
26. 창안관련 발명특허 보상
27.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사무조정 및 협의
28.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29. 의회요구 각종자료 종합관리 및 지원
30. 법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31. 법무사무의 조사·수집·연구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의 심사와 편찬
32. 훈령·예규의 심사와 법령의 질의·심사 경유
33. 각종 법령집 관리 운영
34.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청구의 처리·조정 통제
35.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
36. 소송지원(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검토 및 변론 참석)
37. 법률자문(서면, 방문, 전화 자문 등)
38.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39. 청문사무 운영
40. 각종 재해 등과 관련한 대민 현장 법률 지원
41.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42. 자치법규 규제 심사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정비
4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정비
44.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
45.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 및 개선
46.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47. 여수시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 운영
48. 여수시 행정규제 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운영
49.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50.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51. 행정규제(인·허가 등) 부서담당자 특별·전문교육과정 운영 지원
52.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홍보
53.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54.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55.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56.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보도자료, 기획보도 작성·제공
3. 고시·공고 관리
4. 시보·시정소식지 발간
5. 지역 언론 동향, 각종 시정관련 신문·TV 보도자료 분석 등 종합관리
6. 브리핑룸 운영 및 기자회견 관리
7. 시장 말과 글 작성·관리
8. 각종 언론매체 구독관리 및 언론단체에 대한 지원·협조
9. 언론사 인터뷰 추진 및 자료 작성
10. SNS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11. 시 대표 SNS 여수이야기 운영
12. SNS 서포터즈 운영 및 관리
13. 소셜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자료 수집
14. 타 공공기관 및 외부 매체와 SNS 홍보 협력
15. 시정홍보사진·영상의 촬영·제작·배포 및 기록보존관리
16. 홍보멀티시스템 운영·관리
17. 시 홈페이지 '여수사진관', '인터넷방송국' 운영
18. 홍보시책 개발 및 기획홍보물 제작
19. 외래 방문자에 대한 시정홍보 소개 및 안내
20. 시정뉴스 제작
21. 홍보영상차량 운영 관리

22. 공원 음악방송 "여수아이파크뮤직" 운영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종합감사
2. 상급기관(감사원, 전남도 등) 수감 및 처분요구 이행
3. 청백-e 시스템 운영
4. 여수시 시민감사관 운영
5.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7. 공무원 비위조사 및 복무 감찰 활동
8. 공직기강 확립대책 및 공직감찰에 관한 사항
9. 진정, 탄원, 이첩 민원 조사 처리(일반행정 및 기술분야)
10. 청렴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1. 일상감사(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민간자본보조 등)
12. 재무감사(수입, 지출 등)
13.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14. 기술분야(토목・건축) 감사 및 민원조사 처리
15. 계약심사 업무
16. 일상감사(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제2절 행정안전국

제7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의전, 행사, 정례조회 및 포상제도 운영

3. 공무원 복무지도·감독,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관리
4. 공무원 해외연수 업무 및 공무 국외출장
5. 보안업무(일반·문서·시설)종합 관리
6. 국정·도정·시정 시책 업무
7. 각종 시민운동 추진
8.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사무
9. 행정구역 관리사무
10. 읍·면·동 예산관리 및 행정지도·복무관리
11. 도지사·시장 관련 현장행정 추진 관리
12.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및 각종 제위원회 종합관리
13. 시민의 날 및 시민의 상 관련 사무 (명예시민증 관련 포함)
14.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관리
15. 자치단체 자매결연 및 출향인사 관리
16. 주민 만남의 날 운영
17. 지방이양업무, 자치경찰업무 전반
18.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개보수 계획 수립
19.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관리
21. 인권보장증진 위원회 운영
22.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23. 공무원 및 공무직 임면 등 인사운영
24. 공무원 및 공무직 충원계획 수립·시행
25. 공무원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관리
26.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관련 업무
27. 공무원 교육훈련 및 직장교육 운영·관리
28. 직제 및 정원관리
29. 조직진단 및 사무의 합리적 배분
30.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업무
31. 공무원단체 관련업무
32. 공무원 및 공무직의 연금·보험·공제사무 관리

33. 지방행정 여론, 동향 분석 보고
34. 각종 사회단체 현황의 종합관리
35. 국민운동 및 안보단체 지원·육성
36.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리
37. 남북 교류협력지원
38.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대책 추진
39.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
40.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등 지원
41.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 운영 및 유족회 지원 업무
42. 여순사건 유적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43. 시장 직인 및 각종 공인관리
44. 기록관리기준표 및 보존문서 관리
45. 전자문서 및 우편물 접수·배부
46. 발간실 운영
47. 다른 국·소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의 지출 및 결산
2. 국·도비, 일상경비 정산관리
3.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관리
4. 공무원 보수지급 및 원천세 관리
5.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리
6. 자금배정 및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관리
7.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및 회계결산(자산·부채 관리 포함)
8. 각종 계약관리(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 기타)
9. 지출원인행위부 관리
10. 물품관리(취득·처분 및 사용 등)
11. 관용차량(집중관리 차량) 유지관리
12. 저공해자동차 관용차 의무구매 및 임차제 업무
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14.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15. 공유재산 관리(취득 · 운용과 유지 · 보존)
16. 공유재산의 처분(매각, 교환,양여 등)
17. 공유재산 공제회 관련 사무
18. 재정공제사무 관리
19. 각종 청사관리 종합계획수립·시행(수도, 전기, 소방, 가스, 오수처리시설 등 포함)

제10조(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안전대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재난대비 교육훈련 관리
3. 지역안전지수 총괄 관리
4. 안전문화운동 추진
5.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6.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사회재난)
7.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시행
8.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 구조 구난기관 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
9. 국가 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11. 사회재난 긴급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12. 시설물 및 건축물 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13. 재난 위험 지정시설 개・보수 계획의 종합지도
14. 취약지역 안전지도 점검 및 방지조치 명령
15. 국가안전대진단 종합관리
16.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및 안전신고 업무 총괄
1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관리
18. 지역축제 안전관리 총괄
19. 특수재난 협업지원・관리 종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운영
2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
21. 민간다중이용시설 점검 업무
22. 응급복구 및 복구계획 수립 전파

23.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24.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종합관리
25.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규정 심사
26. 승강기 관리
27.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관리
2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관리 총괄
29.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30.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
3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33.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및 안전계획 수립 점검
34. 자연재해에 따른 종합대책 및 지도관리
35. 자연재난 관련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재해피해상황 집계·보고, 자율방재단 운영
36.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37.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구조대의 종합운영 관리
38. 방재체제 구축 및 훈련계획 수립·실시, 지도감독
39. 기상 특보 발령에 대한 조치
40.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41. 해빙기, 여름철 등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지도
42. 지진해일시스템 운영 관리 및 경보단말장치 유지관리
43. 그 밖의 재해대책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44. 민방위 경보시설・장비 및 경보통신망 유지관리
45. 화생방 방호계획수립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46. 화생방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 추진
47. 민방위계획 수립・시행
48. 민방위협의회 구성・운영 관리
49.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 관리
5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51. 충무계획 수립 조정 및 방위협의회 운영

52.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인력·물자·시설동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53. 민방위대원 자원관리 및 시행
54.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
55.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조직편성 운영
56. 민방위대 검열계획 수립·시행
57.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58. 민방위대원 신고 및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59. 민방위 동원 관리
60.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
61. 그 밖의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대원 자원관리 관련 사무

제11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방세 종합 전산운영 관리
3. 지방세정 홍보 및 교육 실시
4. 지방세 세입 및 결산 관리
5. 지방세 세수 추계 및 통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7. 지방세환급금 지급 및 충당
8.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운영
9. 지방세 부과 전반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사항
11. 가산금 조정
12. 재산조회(과세사실조회)
13. 지방세 납세 고지(정기분, 수시분)
14.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15. 지방세 징수유예 등
16.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17.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0. 지방세 자진신고분 처리
21. 지방세 제증명 발급
2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

제12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세 징수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징수촉탁
3.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
4.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업무
5.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6. 지방세 체납액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납세고지서(정기분) 반송분 처리
8. 지방세 체납액 독촉 고지 및 체납처분
9. 중가산금 조정
10. 체납액 구제사무 및 소송에 관한 사항
11.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12.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13. 지방세 체납처분의 징수유예
14. 「자동차관리법」 위반(등록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관리법」 위반(정기검사)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18. 「도로교통법」 위반(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19. 일반회계 중 각 부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에 관한 사항
20.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1. 금고계약 및 관리, 지도·감독
22.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23. 세외수입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4.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조정
25.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26. 일반회계 세입정리 및 결산
27. 세외수입 수납 조정 및 관리
28.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9. 고향사랑e음시스템 운영

제13조(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실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통제
2. 민원사무 전용 공인관리
3. 읍·면·동 민원처리 지도·감독
4.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5. 주민친절도 조사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6.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7. 행정사업 신고사무 처리 및 지도·감독
8. 민원행정 쇄신 시책추진
9.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및 종합관리
10. 민원불편신고센터 설치 운영
11.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12. 정보공개 운영 업무
13.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14. 학력아동 취학업무 지도·감독
15. 민원관련 제증명 교부
16.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업무관리
17. 여권 지방분소 운영
18. FAX, 우편, 전자 민원처리 및 정산 업무
19.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사무
2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21. 가족관계등록 사무
22. 국적취득·상실 신고 수리
23. 수형인명부 및 후견등기사실 관리
24. 신원증명사항 회보
25.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 검사

26. 토지 이동지 정리
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 사무
28. 소유권 변경 정리
29. 지적전산 사용자 권한 관리
30.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31. 건축물 대장 등 제증명 발급
32. 외국인 토지취득관리
33.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리
34.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35. 부동산실명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36.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관리
37.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제반업무
38.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업무
39. 도로명·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리
40. 주소정보사업에 관한 업무
41.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42.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4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관리
44.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45. 지적 재조사 사업 관리

제3절 문화산업국

제14조(문화산업국) 문화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산업지원과장・지역경제과장・청년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시행

3. 지방문화예술 진흥관리
4. 문화·예술·종교단체 지원육성 및 관리
5. 각종 제향행사 지원 관리
6. 종교행사 지원 및 향교 사업지원·관리
7. 향토사 편집 발간 관리
8. 시립예술단 지원 및 관리
9. 문화예술행사 추진
10.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계몽 교육
11. 거리문화 활성화 및 예술인 창작 공간 운영
12. 관광문화축제 및 관광체험행사 지원
13. 여수시 축제위원회 운영
14.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관리
15. 공연장 등록 관리
16. 문화산업 지원 관리
17.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상영 신고
18. e-스포츠산업 관련 업무
19.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관리
2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 신고 관리
21. 공예품(민예품) 관련 사무
22. 문화기반시설 확충
23.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무
24. 시민·문예회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25. 시민·문예회관 임대계약 및 임대사무 관리
26. 시민·문예회관 시설 유지 및 환경 관리
27. 시민·문예회관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제16조(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재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2. 유·무형 문화재의 보호 육성
3.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및 보존지구 지정 관리
4. 문화재(사적)보호 관리 및 문화재 발굴(보수) 조사

5. 문화재 복원 및 보수 계획 수립·시행
6. 매장문화재 보호관리
7. 세계유산 등재업무
8.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 및 추진
9. 문화재 매매업소 관리
10. 문화재(사적) 관람료 징수 및 사용허가
11. 전통사찰 등록(경유) 및 보수정비
12. 문화재(사적) 주변 정화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 관리
13. 선사유적공원 등 유적관련 시설물 관리
14. 여수시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관리
15.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6.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관리
17.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8.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추진

제17조(산업지원과)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수국가산단 기업체 지역협력사업 지원
2. 국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원 업무
4. 투자유치시책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5. 투자유치 지원제도 운영 및 시책개발
6.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제도 운영
7. 전략기업 기획유치 및 국내 신산업 투자유치
8. 투자유치위원회 등 운영
9. 국내·외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10.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1. 투자실현 촉진 및 사후관리 사항
12. 투자유치 실적 및 통계 관리, 투자 분석
1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및 업무협의
14.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총괄
15. 4차 산업 및 신산업 육성 및 지원

16. 미래전략과제 발굴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17.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지원(체험)센터 및 과학관 운영·지원
18. 연구개발(R&D) 사업 육성 및 지원
19. 석유화학산업 육성 및 지원
20.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업무
21. 지식기반 및 신소재산업 육성 지원
22. 산업단지(여수국가산단,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건축 및 환경관련 인・허가 원스톱 처리 지원(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며, 삼일자원비축단지를 포함한다.)
23. 노동자 복지・노동정책・노동권익 개선・노동보호에 관한 사무
24. 노동조합 설립지도 및 설립신고 수리
25. 노사동향 관리
26. 노동관련 단체지도 및 지원
27. 노동쟁의행위 동향관리
28. 근로자 복지시설 위탁운영 지도관리
29. 여수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30.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
3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제18조(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에너지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추진
2. 에너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관리
4. 원자력발전소 건립 후보지 선정 및 관리
5.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관련 업무
6.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추진
8.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유치
9. 해상풍력발전사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0. 전기사업(태양광 등) 허가(1,000kw미만)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2.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13. 수소특화단지 구축 및 활성화
14.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지원
15. 여수광양만권 수소공유배관망 구축
16. 수소분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원
17. 수소산업 교육 및 홍보
18.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 및 사후관리(산단 제외)에 관한 사항
19. 도시가스시설 공사 계획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0. 석유판매업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1. 석탄가공업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2. 전기공작물 시설 관리

제19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 수출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통상지원
3. 산업동원 계획 수립·시행
4. 여수시 상품권 운영 관리
5.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터 운영
6. 계량기 검사 및 수리·증명업 등록관리
7. 상거래 질서 및 공정거래 사무관리
8. 방문·통신·다단계 판매업 지도관리
9. 대규모 점포 및 대부업 등록에 관한 사항
10.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11. 공산품 품질관리 및 표준화 사무관리
12. 전남경제살리기 평가사무
13. FTA 대책에 관한 사항
14. 새마을금고 관리(정관 변경 인가 등)
15.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상공인 지적재산권 취득지원 발굴 육성
17.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자금지원

18. 중소기업 창업지원 육성관리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19.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20. 공장설립(등록) 승인(신고)·변경 및 증명서 발급 업무
21. 테크노파크 업무지원
22. 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관리
23. 제조업체 현황관리
24. 중소기업제품 구매관련 업무
25. 공장등록업체 지원 및 관리
26.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29. 전통시장·상점가 환경개선사업 및 활성화 대책
30.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31. 공설시장 사용허가·취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
32. 전통시장 인정・취소, 상인회・시장관리자 등록・취소
33.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34.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운영
35.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운영
36.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운영
37.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발굴·육성
38.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39. 마을공동체 발굴 및 지원
40.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41. 마을기업 육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42. 마을기업 신규 발굴·육성
43. 협동조합 신고·수리 지원, 현황 관리
44. 공유촉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45. 공정무역활성화 사업 추진

제20조(청년일자리과) 청년일자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목표공시제 수립 및 관리 등)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총괄 조정 및 평가
3. 일자리 관련 재정집행 현황 분석 및 평가
4. 지역 일자리 관련 고용동향 분석·평가 및 통계작성
5. 일자리 민·관·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6. 일자리대책본부 구성·운영
7. 일자리 정부평가 등 준비·수감
8.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고용현황 관리
9. 공공부분 생활임금 결정
10.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11. 구인·구직 상담 및 연계지원
12.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등 제반업무
13. 일자리 박람회
14. 기타 일자리관련 정책 총괄
15. 세대별 적합 직종 및 신직업 발굴
16.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실행지원
17. “일모아 시스템(고용노동부)” 유지관리
18. 계층별·연령별·대상별 일자리 시책 발굴 지원
19.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
2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21.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제반업무
2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3. 중장년층(신중년) 일자리사업(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추진
24. 부서별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총괄 관리 및 협업관계 구축
25. 기타 일자리 창출 정부·전남도 공모사업 추진
26. 지역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역맞춤형 인구시책 개발
27.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28. 저출산 극복 인구 개선교육 및 홍보
29. 지역 인구 통계·진단
30. 인구정책 지자체 평가 대응
31. 인구정책 지자체 관련 부서 사업 연계 및 기획

32. 인구정책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33. 인구정책 시군구간, 시군구-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34. 인구정책 관련 법령·위원회 등 제도적 기반 구축
35.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6. 청년정책 위원회 설치·운영
37. 청년정책 세부사업 협업부서 조정 및 협력관계 구축
38. 청년지원센터 운영
39. 청년 인력양성 추진상황 관리 및 지원
40. 청년 취업 및 창업·창직지원
41.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42. 청년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 사후관리
43. 청년활동가 및 청년관련 단체외의 협력지원 및 정보교류
44.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분석 및 평가
45. 청년 문화, 복지사업 추진상황 관리 및 지원
46.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47. 청년지원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48. 청년 취·창업, 직업 상담
49. 신규 청년공간 및 센터 조성·운영

제21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책 수립 추진
2. 정보화 시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
3.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
4. 대표 모바일앱 운영 관리
5. 메타버스 추진
6.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8. 로니 운영 및 활성화 추진
9.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10. 전남스마트쉼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11.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추진

12.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운영 업무 추진
13. 통계조사의 계획 수립·시행 관리
14. 통계의 심사 및 분석
15. 통계자료 수집 및 통계연보 발행
16. 농림어업 총 조사
17. 인구주택 총 조사
18.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19. 그 밖의 통계관련 사무
20.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21.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지원
22. 스마트도시협의회 구성 및 운영
23.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4. 공간정보 자료 구축 및 관리
25. 공간정보 보안관리
26. 드론산업 육성 및 정책 총괄지원
27.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체계 운영
28.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29. 디지털트윈 도시모델 구축
30. 정보화 및 전산 표준화 관련 사무
31. 전산장비 도입 및 상용소프트웨어 보급관리
32. 시군구 행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33. 전산실운영 관리
34.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운영
35.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36.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운영
37.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38. 생활안전체험관 운영관리
39. 시민안전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40. 어린이 보호 및 안전구역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41.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도입 추진

42. CCTV 영상정보 운영업무 추가연계 추진
43. CCTV 전용회선 운영관리
44.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 관리
45.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추진
46. 영상회의 및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관리
47. 공공시설물 건축공사(통신) 감독업무
48. 행정전화 및 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49. 콜센터 계약 및 관리운영(안심콜 포함)
50. 공인망 및 보안장비(방화벽, DDoS 등) 운영관리
51. 정보통신 공공요금 운영관리
52. 건축물 정보통신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전검사 업무 추진
53.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관리운영
54.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55. 자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56. 전자팩스시스템 및 모사전송기 운영관리
57. 관과소·읍면동 통신공사 및 감독업무 추진
58. 직원, 시민 정보화 교육 및 상설교육장 운영
59. 인터넷 사랑방 및 주민정보이용 시설 구축 관리

제4절 교육복지국

제22조(교육복지국) 교육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종합계획 수립·조정
3.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5.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6. 지역협의체(민간협의체) 운영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9.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10. 소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1.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12. 상담실 운영(각종 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등)
13. 이웃돕기, 후원결연, 긴급복지지원
14. 저소득층 불량주거 관련 민간단체 연계
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16.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 및 통지
17. 기초생활보장업무
18.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업무
19.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20.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21. 지역자활센터 관리
22. 자활프로그램 개발
23.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24. 생업자금 융자
25. 노숙인 업무 및 관련 시설관리
26. 의료급여 업무
27.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전산망 구축 관리
28.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홍보·교육
29.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등)
30. 복지대상자 보장 결정 및 급여통지
31.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32. 자원봉사 계획수립
33. 자원봉사활동 개발・운영

34. 자원봉사단체 지원
35. 자원봉사센터 관리

제24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노인돌봄서비스사업
2. 기초연금 업무
3.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4. 노인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5. 노인단체 지원관리
6. 홀로사는 노인 안전시스템 구축
7. 노인 공동생활보금자리 운영
8.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운영
9. 노인복지기금 관리
10. 사설묘지 설치 신고 및 허가
11. 불법묘지 지도·점검
12. 장례식장 지도·감독
13. 면단위 공중목욕장 지도·감독
14. 노인 사회적 보호 체계 및 인권 증진
15. 노인복지시설 점검 및 관리
16. 노인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감독
17.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18.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19. 장애인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리
21. 장애인단체 지원관리
22. 장애인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감독
23.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4.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심사 업무 추진
25.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26.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27.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28. 여성장애인지원 사업
29.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
30. 장애인일자리 사업
31. 장애인 편의증진
32.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33. 경로당 관리 및 활성화 사업
34. 소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5. 공설장사시설 설치·조성 및 관리 운영
36. 공설장사시설(승화원, 추모의 집, 자연장지) 사용료 징수 및 사용 신고 등
37. 공설묘지 민간위탁 관리감독 업무 및 기금관리
38. 공설장사시설(승화원, 추모의 집, 공설묘지) 시설물 및 부속시설 관리 운용
39. 공설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업무

제25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보호시설 및 상담소 지원관리
3.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관리
5. 성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관리
8.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9.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관리
10. 청소년보호・육성 종합대책 수립
11. 청소년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12. 아동수당 및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13.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14.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운영 및 관리
15.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7. 아동학대조사 및 초기대응(신고,접수,현장조사 등)

18.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 사례관리
19. 입양, 가정위탁 업무
20. 보육정책 및 보육지원 수립 시행
21.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지원
22. 어린이집 인가
23.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에 관한 사항
2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 계획수립·시행
25.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 전보업무
26.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2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28. 온종일 돌봄 업무 수립·시행
29. 다함께 돌봄사업 센터 업무 계획 수립·시행
30. 중장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31.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2.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33. 영유아 보육료 보장결정 및 지원
34. 어린이집 교직원 관리 등
35. 유치원 운영 지원(교육경비 지원, 정산, 업무 협의 등)
36.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3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38. 여수시 가족+센터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39.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시설단체 지원 및 민간행사 지원
4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41. 외국인주민 및 가족지원 공모사업 및 시책추진
42. 재여외국인 한마당 행사
43.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44. 드림스타트 서비스 계획 및 수립 시행
45.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46.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자원 개발
47. 방문조사 서비스 제공 및 통합사례 관리

제26조(체육지원과)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생활체육 및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각종 체육경기(시민체전 등) 개최 및 유치 지원
3. 여수시 체육회 및 여수시장애인체육회 지원
4.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5. 전국체육대회 준비
6.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유발효과 증진 및 실적관리
7.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및 관리
8. 레저스포츠 대회 유치 및 이벤트행사 발굴·지원
9. 생활체육 교실 운영
10. 체육관련 단체육성 및 직장체육 활동 지원
11. 전지 훈련팀 유치전략추진 및 지원관리
12. 시민 레저시설 확충 및 레저활동 관리
13. 체육시설업 신고업무 및 지도단속·과태료처분·징수관리
14. 각종 체육시설 신설, 보수, 유지관리(동네체육시설 포함)
15.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의 대부·대관 및 사용료 수납

제27조(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시행
2. 타 부서·기관과의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관리
3.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참가
4. 평생학습기관 관리·지원
5.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운영
6. 평생학습관 상설 프로그램 운영 관리
7.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관리 등
8.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에 관한사항
9. 교육국제화특구 기본계획 수립·시행
10.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국제화특구 특화사업 추진 및 운영
12.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운영·관리

13. 시민 외국어교육 관련 사무
14. 초·중·고 학교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경비 보조 지원
15. 초·중·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16. 지방대학 상생협력 업무
17.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18. 인재육성 장학회(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19. 폐교시설 총괄 관리(단, 폐교개발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추진)
20. 여수아카데미 교육
21. 지역 명문학교 육성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한 제반사항
22. 행복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23. 여수·남도·전남 학숙 운영 관련 사무
24.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추진

제28조(도서관운영과) 도서관운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3.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위원회 운영
4. 이순신·쌍봉·현암·환경·돌산·소라·율촌도서관 운영 및 관리
5. 이동도서관 운영
6.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7.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
8. 공립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관리
9. 도서관 전산망 구축 관리
10. 도서관 건립 및 확충계획
11. 도서관 방역 및 기계·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
12. 도서관 열람자 관리·지도 및 도서상담·자료이용 지도
13. 도서관 자료수집 및 목록작성 관리
14. 도서등록 및 장비 관리
15. 시설 사용료, 자료 복사료 부과·징수
16.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제5절 수산관광국

제29조(수산관광국) 수산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산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어업생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해양정책과장·섬발전지원과장·섬박람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관광종합 기획
3.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4. 전남 경제살리기 평가(관광진흥) 업무
5. 관광사업등록 및 지도관리(여행업)
6. 관광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7. 광역관광 실무협의회 운영 관리
8. 관광자원의 보호 및 육성관리
9.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10. 관광개발진흥기금 관리
11. 관광지 행락질서 확립업무 총괄운영
12. 관광동향 분석 및 관광객 이동사항 통계관리
1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14. 관광종합계획 수립
15. 관광분야 투자유치활동 및 투자유치 설명회
16. 하멜전시관 운영 관리
17. 전라좌수영 거북선 운영 관리
18. 시티-투어 사업 추진
19. 관광마케팅 종합기획 조정
20.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21. 관광객 유치 상품개발 및 운영(관광여행, 체험, 테마관광 포함)
22. 관광홍보 총괄 및 각종 홍보물 제작·지원
23. 관광종사원 양성 및 관리

24.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25.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팸투어 운영
26. 관광설명회 및 박람회 운영 지원
27. 관광기념품(특산품) 개발 및 육성관리
28. 여수 마이스(MICE)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5년단위)
29. 마이스유치 활성화 종합계획수립(1년단위)
30.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 지원 계획수립(1년단위)
31. 국내·외 마이스유치 홍보마케팅 추진
32. 도시 브랜딩을 위한 마이스 행사 개최
33. 여수마이스 서포터즈 운영
34. 국제회의도시 추진 환경조성
35. 국제크루즈 관광 및 해외 마케팅 활성화 사업
36. 관광특화·명소화 사업
37. 관광(단)지 지정 승인신청 및 조성사업 시행
38. 관광(단)지 개발 지도
39. 해양관광개발계획 수립
40.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계획 수립
41. 4계절 체험형 관광지 개발
42. 생태·녹색, 문화관광 개발사업 등 기초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43. 섬 관광자원화 관련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44. 섬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및 지도
45.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 및 추진
46. 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및 해양 테마펜션 업무
47.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
48.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운영
49.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 등록, 지정 및 관리
50. 관광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
51. 국동임시별관 공무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우편물 접수 배분

제31조(수산경영과) 수산경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산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및 관리
3. 어촌계 설립인가 및 어촌계장 현황 관리
4. 영어법인 등록 및 현황 관리
5. 바다의 날 행사 추진
6. 수산업경영인 관리 및 행사 지원
7. 어업인 위령탑 시설관리
8. 귀어가 및 수산단체 관리(현황)
9. 어선동원 관리
10. 해양수산분야 충무계획 수립
11. 산업기능요원(어업인후계자) 복무관리 및 지도
12. 해양수산사업 신청업무 총괄
1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추진
14. 귀어인 창업 및 주택구입 신청・지원 관리
15. 귀어인 어업지도 및 육성 지원관리
16. FDA 지정해역 관리 및 신규 지정 추진
17. 수산물유통・가공 식품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8. 수산물 수협별 위판 상황 및 가격동향 관리
19. 수산물 가공업(냉장・냉동업)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20.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21.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리
22. 대일 수출용 이매패류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리
23. 대도시・백화점 지역 특산물(수산) 판촉행사 및 시식회 추진
24. 수산물 해외수출 지원 및 해외판촉행사 추진
25. FTA 및 TPP 협상관리 및 피해최소화 대책추진
26. 국내외 수산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27. 수산물 공동작업장시설사업 추진 및 관리
28. 수산물 유통시설·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 및 관리
29. 여수시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지정 및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30. 여수시 등록상표 사용업체 및 지역 특산품 판매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31.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추진
32.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 및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 추진
33. 어선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34. 근해(잠수기, 기선권현망)・연안어업허가 관리 및 행정처분
35. 어선어업 분쟁 조정
36. 연근해 어선 현대화사업 및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추진
37.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사업 추진
38.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리
39. 방치어선 정비지도 및 관리
40. 총 허용 어획량(TAC)조정 및 관리
41. 구획 어업(이동성)허가 관리 및 행정처분
42.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지원사업 추진
43. 해파리 구제(어선·어구) 및 해파리 가공식품사업 추진
44.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 추진
45.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립·시행(내수면 포함)
46. 해난사고 예방 및 어선 안전조업대책 관리
47. 특별 사법경찰관(수산분야) 운영관리
48. 어업질서 확립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49. 「수산업법」 위반자 검거, 지휘건의 및 사건송치
50. 어업지도선 유지관리
51. 불법어업 동향관리
52. 불법어업자 구속사건 특별관리
53.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업무
54. 어선등록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55. 어선등록(신규·변경) 및 관리
56. 어선 건조, 개조 발주허가 관리
57. 어획물 운반업 등록 관리 및 행정 처분
58. 미등록 어선정비
59. 어선세력 및 어선기본 통계조사 관리
60. 어선분야 연구・교습어업 허가

61. 포획·채취금지 해제 허가 및 관리
62. 신고어업 관리 및 행정처분
63. 어선원부등본 발급 관리
64. 어선 압류 및 근저당 설정·해제
65. 국동임시별관 유기민원 접수 및 지방세 신고 납부 처리
66. 여수시장 분임민원 사무전용 공인사용 및 날인통제
67. 낚시어선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관리(과태료 등)
68. 낚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69. 낚시 통제구역 설정 및 관리
70. 낚시터업 허가ㆍ관리
71. 낚시인 안전 관리
72. 낚시도구ㆍ미끼 규정 지도ㆍ단속
73. 불법 낚시행위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
74. 낚시산업 지원 및 육성
75. 낚시 관련 행사 개최
76. 낚시레저스포츠센터 및 돌산 해양낚시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77. 유어장 지정ㆍ관리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
78. 수산업진흥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79. 수산분야 통계관리(빅데이터)

제32조(어업생산과) 어업생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2. 어업(양식업) 면허 처분 및 관리
3. 어장(면허양식장) 관리실태조사서 징구 및 관리
4. 어업권(양식업권) 관리실태 현장조사 추진 및 관리
5. 어장(면허양식장) 분쟁 조정(조사) 및 관리
6.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업권 및 면허양식업권 행정처분
7. 어업권(양식업권) 원부 발급 및 관리
8. 어업권(양식업권) 관리 전산화 추진
9. 어장(양식장) 관리선 지정(승인) 및 관리
10.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장(양식장) 관리선 행정처분 및 관리

11. 구획어업(정치성) 허가 처분 및 관리
12. 수산관계법령 위반 구획어업(정치성) 행정처분 및 관리
13. 정치성 어업권(면허어업, 허가어업) 감척사업 추진 및 관리
14. 어장(면허양식장) 청소계획 수립 및 시행
15. 어장(면허양식장) 청소 승인 및 관리
16. 보호수면 지정 추천 및 관리
17.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직불금 사업 추진 및 관리
18. 양식장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19. 수산증양식 장비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20.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
21.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22. 수산 증·양식 사업계획 수립·시행
23.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24. 마을앞바다 자원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25. 바다목장사업 관리
26. 인공어초시설사업 관리
27.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및 행정처분
28. 수산 동·식물 이식 승인 관리
29. 수산종자(육·해상) 생산업 허가 및 행정처분
30. 양식품종개발, 시험어업 관리 운영
31.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추진 및 관리
32. 내수면 어업 종합개발 관리
33. 내수면 어업 면허·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34. 해조류 조성에 관한 사항
35. 수산장비 임대활용사업 추진 및 임대운영 관리
36. 친환경 에너지이용 보급사업 추진 및 관리
37. 해삼씨뿌림 및 서식기반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38. 바다갯녹음 발생 시 피해조사 및 복구사업 추진 관리
39. 양식시설 현대화지원(융자)사업 추진 및 관리
40. 바다숲조성사업 관리

41. 어장 정화사업 추진 및 관리
42. 행정선, 어장정화선, 청소선 유지관리
43. 적조방제 종합대책 수립·시행
44.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45. 황토적치장 관리
46. 해적생물 구제 관리
47.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지정 및 사후관리
48. 폐스티로폼 감용기공장 운영관리
49. 적조방제장비 지원 및 관리
50.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51. 수산부산물(패각) 분리배출 신고 및 처리업 허가에 관한 업무
52. 수산부산물(패각) 재활용 통계조사
53. 수산부산물(패각) 분리배출자·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54. 패각재활용 장비 지원
55. 패각친환경처리 지원
56. 월동, 월하장 업무추진
57. 자연·어업 재해 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58. 자연·어업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
59. 연안어장 오염방지 및 피해예방 대책 관리
60. 해안가 유류오염 방제 추진
61. 해안가 유류오염 피해보상 관리
6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63. 해상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64. 수산동물 질병관리 및 백신·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추진 관리
65.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추진
66.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제33조(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 친수공간(해양공원 등) 조성사업
3. 무역항 관련 업무협의

4. 조선소 집단화시설 및 조선산업 유치
5. 비항만관리청 민간사업 유치
6. 항만개발 관련업무 협의 및 지원
7.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지원에 관한 사항
8.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시설물 관리 및 유치기념관 운영
9.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기념행사 추진 및 지원
10.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11.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시행
12. 소호요트장 시설물 관리
13. 해수욕장 운영 및 편의시설물 설치ㆍ관리
14.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업무
15. 해양스포츠 대회 유치 및 운영
16. 해양레저기구 등록
17.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리
18.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19. 연안항 유지 관리
20.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매립허가ㆍ준공 관련업무 총괄 및 관리
21. 연안통합 관리계획 수립 및 연안관리
22. 연안정비 사업 및 습지 보전관련 업무
23. 폐선처리장 시설점검 및 지도관리
24.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시행
25.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어선 외) 등 방치물 제거 및 관리
26. 해양시설관리에 관한 사무(「해양환경관리법」 관련)

제34조(섬발전지원과) 섬발전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섬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도서교통(도서지역 여객선)관련 업무
3. 도서지역 거주민 여객선 운임 및 생필품 운송비 지원
4. 도선 운영비 및 수리비 지원
5. 시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6. 해운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8. 아름다운 섬 발전 포럼 구성 및 운영지원
9. 도선 및 여객선 결항 시 대책 방안 강구
10. 여수 365 섬계획 관련 업무 추진
11.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및 유지관리
12. 「섬 발전 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
13. 도서 자원조사 및 관리
14.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
15. 「섬 발전 촉진법」에 의한 섬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16. 무인도서의 개발사업 인·허가 및 관리
17. 도서 전화사업 지원
18. 비개체 도서내 급유대책 수립 및 관리
19. 국가어항 유지관리 및 개발지원(다기능종합어항 포함)
20. 지방어항 시설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21. 어항지정 협의
22. 어촌정주어항 시설사업 및 유지관리
23.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24.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제35조(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
2. 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추진
3. 섬박람회 홍보 업무
4. 국제 섬 포럼 개최 추진
5. 섬박람회 참여국 및 관련 기관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6.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구성·운영
7. 국제협력 종합계획 수립・시행
8.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관리
9. 국제서신 및 통신문 작성 등 해외문서 번역관리
10. 국제 외교・통상・문화・체육 등 교류와 관련된 용역관리

11. 국제교육원 협력사업 지원
12. 자매도시간 문화·체육행사 교류사업
13. 지구촌사랑나눔 운영지원
14. 섬박람회 기반조성사업 추진
15. 개도 섬 살림 문화관 기본계획 수립

제6절 환경녹지국

제36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생태과장・자원순환과장・산단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7조(기후생태과) 기후생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3. 환경관련단체 운영 관리 및 지방의제 21에 관한 사항
4. IS014001 환경행정시스템 사후관리
5.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7. 지방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8.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9. COP33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환경기구 협력에 관한 사항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12.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
1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15.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16. 도시환경 소음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지원 업무

18.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9.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20. 자연공원 지정 및 계획수립
21.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22. 특정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23. 국립공원공단(자연공원)협의에 관한 사항
24.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5.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기동포획단 운영 관리
26. 국립공원 해제 및 편입에 관한 업무
27. 전국오염원조사표 작성 및 보고(수질)
28.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9.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등 관련영업자 지도 점검
30.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31. 관리대상 공중화장실 청소방역 총괄(설치 및 유지 관리는 주된 시설 부서)
32.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등 관련영업자 지도점검
33.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 중재
35. 환경기술인 교육에 관한 사항
36. 배출시설(대기·수질·소음진동)설치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7. 비산먼지 발생·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8. 환경오염 생활민원 신고 및 지도단속 관리
39. 소음·진동 등 환경관련 규제지역 지정관리

제38조(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3.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4.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관리
5.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조성 및 관리
6. 도시재생 사업 시행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10. 전선지중화 사업(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개별사업 대상 제외)
11. 농어촌지역 새뜰마을사업 추진
12.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1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 및 관리
15.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도 및 운영
16. 도시재생 사업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7. 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영
18. 지장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관리
19. 수용재결 신청 및 보상관련 소송사무 수행
20. 도시재생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시민대학, 소규모 자체사업 등) 추진
21. 도시재생지역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지원·관리
22.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23. 광고물 신규표시 및 연장 허가(신고) 사항
24.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25. 옥외광고업 등록 및 신고, 처분에 관한 사항
26.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
27. 불법광고물 지도·정비에 관한 사항
28.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관리
29. 옥외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30. 간판 시범거리 조성 및 관리

제39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2.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위원회 운영
3. 여수시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 수립
4. 청소대행 위탁계약 및 대행업체 지도·감독
5. 대형폐기물 배출관련 사무
6. 국가 및 율촌산단 가로환경정비사업

7. 쓰레기관련사무(폐기물, 종량제 등) 통계업무
8. 아름다운 여수가꾸기 청결활동
9.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 및 관리
10.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11.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금 지급
12. 재활용 선별장 운영
13. 여수 나눔 행복 자원순환가게 운영
14.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 관리
15.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등 관리
16.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17.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및 민간위탁 사무
18. 재활용 촉진 지원 사무
19. 음식물폐기물 억제 및 처리 관련 사무
20.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단속
21.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22. 도시형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
24.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25.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26. 도서지역 폐기물 간이매립장 운영관리
27. 도시형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28.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사후관리
29. 도시형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30.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시행
3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32. 폐기물 매립시설 사전적립금, 사후관리이행 관리
33 폐기물 관련 사업장 법정교육 관리
34.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 관리
35. 공한지 방치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집행
36.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37. 폐기물 처리시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관리

제40조(산단환경관리과) 산단환경관리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지역의 범위는 국도 17호선을 기준으로 율촌면부터 둔덕 삼거리까지 산업단지 방향 내 지역(주삼, 삼일, 묘도 방면)으로 하며 오천일반산업단지, 화양농공단지를 포함한다]

1. 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지원 등)
2.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3. 「환경영향평가법」관련 검토 및 심의
4.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5.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TMS 관리·운영
6. 산업단지 환경관련 단체 운영 및 관리
7. 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8. 악취관리지역 종합상황실 운영 및 측정 인프라 구축
9.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0.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2. 휘발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14. 민간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
15. 산업단지 환경오염사고 방제 및 대응
16. 여수국가산단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
17. 오천지방산단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
18. 화양농공단지 안전점검(가스, 전기, 열사용기자재) 및 행정조치
19. 여수국가산단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계획 수립・시행
20. 여수국가산단 안전문화캠페인 계획 수립・시행
21. 여수국가산단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시행
22. 여수국가산단 안전기술세미나 계획 수립・시행
23. 여수국가산단 고압가스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 추진
2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5.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수립·시행
26.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업무
27. 폐기물매립시설 사전적립금, 사후관리이행 보증업무
28. 폐기물관련 사업장 법정교육
29. 사업장·건설·지정 폐기물 배출사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0. 폐기물처분업(중간,최종,종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1. 폐기물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2.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건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3. 석면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4. 고형연료제품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5.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여수시 전역)
36. 산업단지 환경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제41조(산림과) 산림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산림조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산지조림 사업
3. 숲가꾸기 사업
4.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5. 나무은행 운영
6. 산림소득사업 지원 및 관리
7. 산림경영계획 인가
8. 산지(보전, 준보전)이용계획 수립·시행
9. 목재 이용 및 생산업 관리
10. 산림기본통계
11.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
12. 임산물 유통 관리
13. 산림조합 등 임업법인단체 지도·감독
14. 임업 기술지도
15. 독림가·임업후계자 육성 관리
16. 산촌개발사업
17. 시유림 관리

18. 임업직불금(제)
19. 산림용 종묘 지원 관리 및 양묘 사업 지원
20.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
2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2. 수목원 조성 및 관리
23. 산림욕장 등 조성 및 관리
24. 산림공원 조성 및 관리
25. 숲길 조성 및 관리
26.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관리
27. 숲 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28. 정원 조성 및 관리
29.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0. 산림보호 및 산림사법단속
31.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추진
32. 산림병해충 방제
33. 임도·방화선등 산림기반 시설 조성 및 관리
34. 임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 신고
35.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에 따른 협의
36. 보호수, 노거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
37. 산지정화 계획 수립 시행
38. 도시숲 조성 및 관리
39. 가로수 ·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40. 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수 관련 협의
41. 중앙분리대, 교통섬, 로터리, 공한지 조경 관리
42. 무궁화 증식 · 우리 꽃 식재 관리

제42조(공원과) 공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녹화계획 수립
2.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유지관리
3. 전라선철도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만흥공원～율촌조화공원) 및 유지관리
4. 공원행락질서 유지관리

5.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 수목·잔디 등 조경 관리 업무
6. 도시공원, 녹지의 비탈면 사후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시공원, 녹지-도로, 택지 등 개발로 인한 비탈면 제외)
7. 녹지(경관, 완충)의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
8. 공원 점·사용 허가(점·사용료 부과)
9. 도시공원 내 공원등 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10. 도시공원((역사, 묘지, 체육공원, 수변공원 제외) 조성 및 유지관리
11. 생활권 주변(동 지역)재해 위험목 정비
12. 도시근린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13.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14. 생각키움 놀이터 조성 및 유지관리
15.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화장실, 조경시설물, 음수대, CCTV 등)
16. 도시공원 내 바닥분수 설치 및 유지관리
17. 이순신광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8.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19. 공원 점・사용 허가 및 협의
20.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21. 도시공원 내 등산로 개설 및 유지관리(무선산, 망마산, 종고산)
22. 녹지(경관, 완충, 연결)의 조성 및 관리
23. 대체녹지 관리(대체녹지 1~3구역)
24.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유지관리(율촌산단, 신월동 완충녹지)
25. 녹지대 복구사업 시행
26. 녹지대 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7. 녹지대 불법 경작 행위 단속
28. 도시녹화 양묘장 운영
29. 타부서 조경사업 심의, 준공, 협의 등
30. 관상수 생산 및 수급계획 수립·시행
31. 도시공원(역사, 묘지, 체육공원, 수변공원 제외) 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32. 도시공원(역사, 묘지, 체육공원, 수변공원 제외) 조성(변경)계획 수립 및 결

정

3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수용재결 및 소송 수행
34. 도시공원(역사, 묘지, 체육공원, 수변공원 제외) 토지 등 매수
35.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 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36. 동백열차 운행 및 유지관리
37. 동백열차 탑승료, 점·사용료 및 기타수입금 징수관리
38. 오동도 유료주차장 운영·관리
39. 관광객 유치, 안내, 오동도내 행락질서 유지
40. 오동도내 불법시설물 및 잡상인 단속
41. 오동도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42. 오동도내 조경 및 수목의 보호육성 관리
43. 오동도내 산림 병해충 방제관리 및 조수류의 보호 증식관리
44. 오동도 점・사용 허가(점・사용료 부과)
45.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금지사항의 단속

제7절 건설교통국

제4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교통과장・건축과장・공영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도로과장・허가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4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도시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3. 각종 자료, 기구 및 비품 관리
4. 전문건설업 등록·변경 신고 및 관리
5. 전문건설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6. 지명위원회 운영관리
7. 도시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8. 도시기본계획 수립
9. 도시계획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0. 시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관리

11. 도시계획 지형도면 승인 및 관리
12.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승인
13. 온천에 관한 사항
14. 유원지 개발관련 업무 총괄 운영
15.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결정
16. 그 밖의 도시계획 관련 사무
17. 측정표의 관리
18. 새꿈도시(마을) 계획수립·조성·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9. 도시지속 가능성 평가사업 기획・추진・평가
20. 도시정책사업 기획・조사・연구
21. 도시계획위원회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연구
2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3.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
24. 살기좋은 도시·지역만들기 총괄
25. 균형발전 업무 총괄
26. 경관계획 수립
27. 경관조례(규칙)운영
28. 경관위원회 운영
29. 경관 심의 및 협의
30. 민간 경관사업 지원 및 시행
31. 경관개선사업 추진
32. 경관협정 체결 추진
33.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34. 공공디자인 사업 심의(자문) 및 협의
35. 도심 옹벽 경관조성 및 보수정비
36.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 운영
37. 지역개발사업 추진
38. 도시지역 내 행위 제한(토지형질변경 등)관리
39.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및 준공검사
40.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1.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및 원상복구
42.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43.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
44. 대체 산림자원조성 부담금 부과·징수
45. 토석(토사) 채취허가·협의(신고)
46. 산지 전용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47. 건축복합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48. 도시계획구역 내 산림형질변경허가·협의
49. 토지형질변경 허가·협의 및 준공검사
50. 물건적치 허가 및 준공검사
51. 토석채취허가
52. 토지분할허가
53. 도시계획구역 내 토석채취 관리 및 준공검사
54. 야간경관사업 시행
55. 고효율 가로등 도로조명 교체 계획수립
56. 읍・면・동 고효율 보안등 교체 계획수립
57.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
58. 보안등(농어촌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
59. 터널등 설치 및 유지관리
60.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61. 연륙교・연도교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

제45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국토교통부 소관(도로 제외) 국유재산관리
3. 공유수면관리(구거 등 육지분)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5. 골재 채취업 허가 및 지도단속
6. 토지이용 및 보상관리
7. 하천 개수공사계획 수립·시행
8. 하천공사의 측량설계 및 공사 감독

9. 보조사업 하천공사의 지도·감독
10. 수자원 이용계획 수립·시행
11. 지방하천 관리
12. 하천 점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관리
13. 하천 제방 유지관리 및 복구
14. 폐천부지 관리
15. 농업기반조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16. 밭 기반 정비사업
17.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계 등록 관리
18. 수리계 등록관리
19. 개간 업무에 관한 사항
20.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 추진
21. 방조제 유지관리 및 간척사업 관리
22. 농업용수 개발사업 및 관리
23. 경지정리사업 관리
24. 농어촌 정주생활권 종합개발사업 관리
25. 농업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26. 가뭄대책 사업추진 및 장비관리
27. 재해에 따른 농경지 복구사업 추진
28. 농업기반사업 설계 및 감독
29.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30.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31. 관정양수장비 유지관리
32. 기계화 경작로 사업추진
33. 새마을 시설물(마을회관 등) 관리
34.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추진(시장포괄, 주민숙원, 소규모 시설공사 등)
35. 부실시공방지 관리
36.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관리
37. 토목직공무원 미 배치부서 토목설계 지원

제46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로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도시계획도로・시도・농어촌도로의 신설・확장에 관한 사항(편입토지보상・등기이전 포함)
3. 고속도로, 국도건설 지원
4.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지방도로 보상 위・수탁 사무
5. 교통량 조사
6. 도로분야 미 보상용지 관리
7. 도로관련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사항
8. 사도설치 허가
9.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0. 그 밖에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에 관한 사항
11. 철도・공항 등 국책사업 추진대책 수립 및 지원
12.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국책사업 추진대책 수립 및 지원(도로법 제10조 제1호 및 제2호)
13. 공항 확장 및 국제공항 조성
14. 철도 복선화 사업 추진
15. 공항·철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7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
3. 교통 영향평가 관리
4. 전시차량 동원 계획 수립·시행
5. 차량 부제 업무
6.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리 및 지도·감독
7.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8.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인가·허가 관련업무
10. 운수지도 종합계획 수립·시행
11. 사업용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및 운수사업체와 운송주선업체 지도감독
12. 사업용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과 과징금·과태료 부과 징수관리

13.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과 교통안전 진단관리
14. 운수 종사원 연수 및 교육관리
15. 첨단 화물운송관리 시스템 운영
16. 육상 물류유통단지의 개발·지원
17. 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물류산업 지원 육성
18. 첨단교통시스템(ITS) 구축 및 운영
19. 교통시설 운영체제(TMS)개선사업
20. 첨단 대중교통시스템(BIS) 관리 및 운영
21. 교통 신호등 설치관리
22. 자동차 사용의 제한·정지·금지명령 및 행정처분
23. 교통안전시설·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24.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차선도색)설치 관리
25. 시내버스 등 승강장 설치 관리
26. 교통시설물 설치지역 협의
27. 자동차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28.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감독 및 검사 대행업소 관리
29. 자동차 출장 검사장 지정 및 지도감독
30.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31. 「자동차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징금 부과 징수관리
32.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범 사건 수사 및 검찰송치
33. 택시미터기 수리전문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34. 자동차 경매장 관리
35. 자동차정비업, 폐차업, 매매업 등록 및 관리

제48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
2.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융자금 관리
3.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
4. 수해주택 조사 및 복구지원
5.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

6.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청년월세, 주거사다리, 행복주택) 추진
7. 한옥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관련
9. 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정보제공
10. 저소득층 불량주거 생활환경 개선사업
1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기구 지도.관리
12.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및 지도.관리
13.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및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14.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전반
15.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지원사업
16. 공동주택관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7.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 관리
18.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리
19. 공동주택 관련 조례 관리
20.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지도·관리
21. 공동주택단지내 위법행위 지도·관리
22. 위반건축물 단속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대장관리(전산입력 포함) 및 등기필 정리
24. 건축물 표시변경에 관한 사항
25.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26.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27. 건축물 관리점검(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노후건축물 등) 및 안전진단
28.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9. 빈건축물(빈집 제외) 정비
30.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1. 부설주차장 관리(기계식 제외)
32.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용역,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지원
33. 녹색건축물 등 제로에너지
3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제49조(허가과) 허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택법」 관련 전반
2.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사용검사
4.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승인
5. 행복주택 건설 지원
6.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시공현장 관리
7. 주택조합 설립인가 등 주택관련 업무
8. 경관·건축공동위원회 등 운영
9.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10. 건축사 및 공사 감리자 지도 감독
11. 건축복합민원 실무 종합협의회 운영
12. 「건축 조례」 등 건축 관련 조례 운영
13. 건축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해체허가(신고)
15. 건축행정건실화 계획 수립 및 운영
16. 건축허가에 따른 주택공급승인 및 분양신고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에 관한 사항
19. 배출시설 설치(대기, 수질, 소음, 진동, 휘발성 유기화합물, 악취)허가 및 신고
20.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21. 특정공사 사전(변경) 신고
22.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변경) 및 신고
2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준공검사
2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25.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및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26.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승인(신고)
27. 폐기물 재활용 신고
28.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허가 승인(신고)

29. 가축분뇨 관련영업(수집·운반·처리 등) 허가
30.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
31. 임시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신청
32. 건축물 용도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검토(위생민원 협의 등 포함)
33.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협의) 및 사용승인
3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35. 공작물 축조 신고

제50조(공영개발과) 공영개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택지분양계획 수립·시행 및 일반분양택지 가격 결정, 대금 수납
2. 택지분양 계약체결, 해지, 매도증서 발급, 가처분 해지, 환매특약 해지
3.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관련 이주사업 특별회계 관리
4.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관리
5. 경도개발에 따른 행정 지원 업무 추진
6.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7. 여수공항 확장사업 위·수탁 보상관리
8. 여수국가산업단지 보상업무 위·수탁 사업추진
9. 국토교통부 보상업무 위·수탁 사업 추진
10.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보상업무 추진
11.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관련 보상업무 추진
12. 지방산단 조성단지 이주대책 추진
13.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이주대책 수립 및 추진
14. 국가·지방산단관련 택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15. 공영개발사업시행계획 수립·시행
16. 경영수익관련 석산 및 골재개발 사업 시행(공공개발)
17. 경영수익관련 공유수면 매립택지 개발사업 시행(공공개발)
18. 배후도시 택지개발사업 관련 업무 시행
19. 율촌 택지개발사업 시행
20. 택지개발 구역내의 각종 법면·절개지 유지관리
21. 만흥지구 택지개발사업
22.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23.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지역 토지개발계획 수립·시행관리(공업용지 조성)
24.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택지 조성
25. 율촌산단 조성 지원(인허가, 사후관리 제외)
26. 상암단지 산업단지 조성
27. 농공단지 조성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

제51조(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2조(하부조직) 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
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물품 및 장비 관리
4.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세입세출관리 및 운영
5.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업무 및 복무에 관한 지도·감독
6.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행정쟁송 지원 및 기능 활성화 방안
7.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관리
8. 의료·약무관리 종합사업계획 수립·시행
9. 의료법에 의한 개설(변경·폐업) 신고 처리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도·단속

10. 간호조무사·의료 유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특수 의료장비 설치·운영신고 처리
12. 약사법에 의한 약국 개설(변경·폐업) 등록 신고 처리 및 지도·단속
13. 의약품판매업 허가(변경·폐업) 신고 처리 및 지도·단속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설 신고 처리 및 지도·단속
15. 의료기기법에 의한 판매업(임대업) 신청 처리 및 지도·단속
16. 마약류 취급자 지정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17. 마약류 명예지도원 운영
18.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등 신고 승인
19.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 지정
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수 사상사 발생 대비 업무
21. 지역응급의료기관·당직 의료기관 지정·관리
22. 구급차·자동심장충격기 운용상황 신고 및 실태점검
23. 화장품·의약외품 판매업 지도·단속
24.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
25.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종합계획 수립
26.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27. 에이즈·성병·한센병·결핵 환자 등록관리
28. 감염병 예방 및 홍보
29.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체계 관리
30. 임상병리실 운영관리
31. 6.25 전사자 유가족 등 검사 시료채취
32. 위생해충 구제사업
33. 소독업 신고 수리 및 지도 점검,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34. 영상의학실 운영관리
35. 보건관련 각종 민원 처리
36. 보건민원처리에 따른 세외수입 관리
37. 각종 질병 검사 업무 전반
38. 환자 진료 및 구강·한방 사업 추진
39.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건강검진사업 추진

40. 사회복지지설 건강검진사업 추진

④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중 • 식품위생 계획 수립
2. 음식특화거리 지정 운영
3. 음식문화 개선시책 추진(음식 덜어먹기 등)
4. 공중・식품위생단체 관리
5.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6.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지원사업 추진
7.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8. 안심식당 지정 운영
9. 『불만 ZERO 여수! 』 홍보사업 추진
10.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추진
11. 여수시식품위생업시설기준규칙 관리
12. 식품・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 등 위생 허가(신고・등록) 수리 등
13.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등록 관리
14. 식품(첨가물)생산실적보고
15. 계절음식점 및 생계유지형업소 등록관리
16. 조리사,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7. 농어촌 민박 신고에 관한 사항
18. 관광숙박시설 승인 및 등록(인·허가)
19. 식중독 원인조사 및 예방관리
20.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1. 부정・불량식품관리
22. 건강기능식품 유통 및 판매업소 관리
23. 수입식품유통 및 판매업소 관리
2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기호식품, 식품안전관리 보호구역 지정 등)
2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26.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원운영
27. 식품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
28.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9.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송치
30.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업소 신고 보상금 지원 운영
31.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계획수립
32.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
33. 옥외가격표시제 운영관리
34. 식품위생(접객업소) 관리・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5. 공중위생업소 관리・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36. 공중위생업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37. 공중●식품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38. 공중 ●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운영
39. 농어촌 민박 관리(지도·계도·행정처분 등)
40. 관광숙박시설 관리(지도·계도·행정처분 등)

⑤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강증진센터 통합운동서비스실 운영
3. 신체활동사업 추진
4. 비만예방관리사업 추진
5. 영양사업 추진
6.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
7. 절주사업 추진
8.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추진
9.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10.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11. 금연상담실 운영・관리
12.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추진
14. 자살예방사업 추진
1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16. 성인・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17. 알코올 및 기타 중독관리사업
18. 중독폐해예방사업 추진
19. 고위험군(범죄피해자, 자살시도자, 법원・보호관찰소 의뢰자 등) 관리사업 추진
20. 정신건강 위기개입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21. 임산부 등록관리 및 모유수유 증진사업 추진
22. 산후조리원 영업신고 처리 및 관리
23. 고위험 임산부・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4.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추진
2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7.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추진
28. 출산장려 지원 및 시책사업 추진
29. 신생아 출산양육비 지원
30. 모자보건관련 업무 지원
31.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추진
32.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
33.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34.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35. 고혈압・당뇨병 정기 교육
3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37.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 추진
38.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39.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0.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에 관한 사항
41. 국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2.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추진

⑥ 보건사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자진료(일반・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
2. 보건사업 및 각종 민원처리

3. 중부보건지소 및 동부도시보건지소 운영
4. 중부보건지소 및 동부도시보건지소 시설 관리
5. 방문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6. 방문보건 등록환자 방문관리
7. 의료 취약지역 순회 의료서비스
8. 섬 통합의료서비스 추진
9.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추진
10. 허약노인프로그램 운영
11.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계획수립
12.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사업 추진
13. 재가 장애인 대상 재활치료센터 운영
14. 재가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15. 지역사회중심재활협의회 운영
16.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17. 지역사회 건강조사
18. 동부도시보건지소 내 근무 직원 복무관리
19. 치매안심센터 운영
20.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21. 치매지역사회 자원강화사업
22. 치매검진사업
23. 치매등록 관리사업
2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25.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53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 농업정책과장·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
2. 농림사업 총괄 추진 및 농정심의회 운영관리
3. 후계농업경영인 및 친환경 농업인 육성관리
4. 농촌 여성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
5. 농업기본 통계 작성 관리
6. 농외 소득원개발 및 고령화 대책추진
7.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관리
8. 농정업무 추진실적평가 관리 및 상 사업 추진
9. 지역 특화사업 추진
10. 지역농업 클러스터 지원사업 추진
11. 농업육성 및 소득향상사업 추진
12. 농업법인·단체 관리 및 농업동향 관리
13. 농지보전 및 이용 종합계획 수립·시행
14. 한계농지, 분배농지, 농지임대차 관리
15. 농업진흥 지역 관리
16. 농지대장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리,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처분
17. 영농소득지원시책 추진
18.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19. 소득작물 명품화 사업 추진
20. 농업경영인·전업농 육성지도 및 선도 농업경영체 육성지도
21. 산업기능요원(농업인후계자) 복무관리 지도
22. 식량생산 종합대책 수립 및 농촌 일손돕기 추진
23.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 수립 추진
24. 맥류 등 밭작물 생산시책 추진
25.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대책 및 농약·비료수급 관리
26. 기본형공익직불제 추진
27. 논이모작직불제 추진

28. 농업기계화 촉진 업무추진 및 농기계 수급·사후관리추진
29. 농업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 지원
30.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업무
31.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추진
32.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추진
33.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 추진
34. 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 추진
35. 농업인안전보험지원사업 추진
36. 농약판매업 및 비료생산업 등록·관리
37.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관리
38. 축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9. 축산시설지원 및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40. 가축개량 및 축산업·한우등록 추진
41. 가축분뇨처리 및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
42.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 및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43. 축산물브랜드 개발 및 육질개선 추진
44. 축산업 육성 개량 및 진흥사업 추진
45. 축산물 및 가축 이력 관리사업 추진
46. 원예특작 생산 및 소득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7. 원예·특용작물 생산량 조사 및 소득분석 관리
48. 종자유통단속 관리
49. 원예특작 재해대책 관리
50. 지역명품 육성 및 시설농업 지원육성
51.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52. 동물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3. 가축방역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 추진
54. 동물병원(수의사·공수의) 및 동물용 의약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55.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신고 및 유통, 위생지도
56. 축산물위해요소 관리지도
57. 가축전염병 발병농가 관리

58.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 안정 지원
59.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

④ 농촌진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2. 농촌진흥 기반조성 및 농촌진흥 시책 홍보
3. 농촌진흥사업 실행계획 및 보고서 발간
4. 농촌진흥공무원 교육 및 특기별 지도인력 관리
5. 농촌진흥사업 예산 신청 및 관리
6. 농촌체험장 조성 및 운영관리
7. 도시농업 육성
8.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9. 농업인상담소 운영 및 지도감독
10. 4-H조직 육성 및 관리지도
11.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종별 실수요자 교육
12.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13. 농업인 교육훈련
14. 농촌지도자 육성 및 관리지도
15.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16.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조직 및 육성 지도
17. 농촌자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18.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술지원
19.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기술지원
20. 여성농업인 선도조직체 육성
21. 농식품 가공기술 및 상품화 기술보급 지원
22. 농촌 여성 전문 능력 개발교육
23.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기술보급
24. 치유농업 육성
25. 농작업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기술보급
26. 도시민 가족텃밭 운영
27. 시가지 주요지점 화단 조성 관리

28. 꽃도시 조성용 꽃묘 생산·공급
29.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 및 지원관리
30. 귀농인 영농지도 및 육성 관리
31. 귀농귀촌 활성화 행사추진
32.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추진
33. 도시민 농촌유치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쌀 생산 종합기술지도 계획 수립·시행 및 재해대책 기술지도
2. 정부보급종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
3. 벼 생육 및 작황조사 포장 선정·운영・조사
4. 맥류생산 종합기술지도
5. 밭작물생산 종합기술지도
6. 종합검정실 설치운영
7. 논·밭토양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에 의한 균형시비 기술지도
8. 식물체 분석에 의한 균형 시비기술지도
9.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지도
10.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운영
11. 벼 병해충 기본예찰포 및 관찰포 설치・운영・조사
12. 순회예찰에 의한 주요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13. 농약안전사용 기술지도
14. 농업기상 관측소 설치·운영·활용
15.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16. 원예·특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계획 수립·시행
17. 원예·특용작물 관찰포 설치・운영・조사 및 병해충 예찰·방제지도
18. 과학영농실증시험포장 관리(원예, 특작분야)
19. 원예·특용작물 영농현장 새기술지원단 운영 관리 지도
20. 화훼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21. 친환경 인증컨설팅 및 신기술보급 지도(원예·특작분야)
22. 지역특화 소득작물 발굴 육성지도
23. 친환경, 소득작목, 축산, 특작 농업인 연구회 조직 육성

24. 기후변화 대응 채소·과수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25. 미래전략 작목 발굴 및 신기술 지도
26. 새로운 양잠산업 기술지도
27.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계획수립·시행
28. 사료작물 재배 기술보급
29. 가축질병예찰 및 방제 홍보지도
30. 친환경 꿀벌사육·벌꿀생산 기술보급
31.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 강화사업 추진
32. 농산물 소득분석 및 경영성과 진단기준 설정
33. 경영상담실 종합상담 서비스 운영
34. 농업기술보급의 정보화 체계구축
35. 농촌지도사업 홈페이지구축 및 전산화지도
36. 강소농 육성
37.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38. 관상 조류 및 곤충 사육장 운영
39. 퇴비 부숙도 측정실 운영
40. 친환경 버섯재배 기술보급 및 출하지도
41. 버섯재배교육장 운영관리
42. 동백 관광상품 보급
43. 조직배양실 및 순화실 운영
44.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 증식 기술보급
45. 과학영농기술 서비스 강화사업 추진
46. 돌산갓 브랜드제고 종합 계획 수립
47. 돌산갓 출하 및 가공 지원
48. 돌산갓 종자갱신 등 재배 연구에 관한 사항
49. 돌산갓 재배 기술 지도

⑥ 농산물유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촉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산물 국내·외 판촉행사 참가 지원
3. 여수시 푸드플랜 수립 추진

4.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육성관리
5. 농산물 표준화 및 규격화 추진
6.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관리
7.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관리
8.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시행
9.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10.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품질관리
11. 농산물도매시장 및 직판장 지도관리
12. 정부양곡 수급계획 수립 시행
13. 정부양곡 가공업, 소규모 도정업 관리
14. 양곡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리
15. 정부양곡, 가공공장 관리 및 양곡가공 조작 지시
16. 수입양곡 수급 및 사후관리
17.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종합 계획 수립
18.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 및 안전성 관리
19.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 및 안전성 관리
20. 학교 무상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
21.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감독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하수도사업단

제55조(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6조(하부조직) ① 수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수도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수도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 재산관리
3.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 배정 관리
4. 지방채 및 기·공채 총괄관리

5. 상하수도사업단 재정계획 수립·시행
6. 상 • 하수도특별회계 지출
7.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관리
8. 상수도 공사 물품구매·제조·용역 등 계약관리
9. 하수도 공사 물품구매·제조·용역 등 계약관리
10. 자금교부 및 정산관리
11.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12. 원천징수 관리
13. 대행업소 관리 및 수탁공사 계약관리
14.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총괄 및 제세입 지도 감독
15.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세입결산
16. 사용료 전산처리 용역관리
17. 포상금 지급관리
18. 다량업소 지도점검 및 부정수도 등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위반 사항 지도단속
19. 요금조정관리
20. 업종변경 및 가구분할, 급수전 명의변경
21. 수도요금 이의신청 처리
22.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수급 관리
23. 수도계량기 점검관리

③ 상수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2. 시설확장에 따른 상수도 계획 수립 및 시행(원수, 도수, 정수, 송수설비)
3. 시설확충에 따른 배수설비 확장계획 수립 시행
4. 상수도 정수와 송수설비 및 시공·감독
5. 상수도 수원개발 및 설계, 시공·감독
6.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
7. 상수도 배수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
8. 공업용수도 송·배수 설비계획 및 시공·감독
9. 배수 및 급수시설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

10. 배수의 종합계획수립 및 비상급수계획 수립시행
11. 배·급수 시설의 증설, 개량, 설계 및 시공·감독
12. 급수구역 조정 및 통제관리
13. 주택건설협의 및 토지형질변경 협의 처리
14. 그 밖의 급수관련 시설물 설치
15. 급·배수관망도 정리 및 관리
16. 다량시설물 점검
17. 무단수도 단속
18. 송수 관망도 정리 및 관리
19. 계량기 교체 및 실험
20. 누수처 수선 및 원상복구
21. 여수국가산업단지내 연관단지 상수도(생활용수, 공업용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22. 노후배수관 세정 및 도장공사 설계, 시공·감독
23. 노후 급수관 교체·설계 및 시공·감독
24. 누수탐사
25. 상수도 시설 누수방지
26. 노후배수관 개조공사
27. 마을상수도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8.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시설설치 및 관리
29. 먹는물 공동시설(마을상수도) 수질관리(약수터, 옹달샘, 공동우물)
30. 타부서 관리 음수대 수질검사 실시 지도
31. 상수도 생산 및 계획조정
32. 배수 가압장 시설 관리
33. 원수·용수관리
34. 상수도 취수설비설계 및 시공·감독
35. 원수 및 정수유량계 점검 및 교정
36. 정수약품 등 수급 및 투입
37. 청원경찰 및 사업장 경비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38. 정수장 지도·감독

39. 사업장 보수 및 개량공사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관리
40. 둔덕정수장 등 5개소 기술진단 관리
41. 상수원 수질오염 연구
42. 사업장(정수장, 가압장, 수원지) 시설물 유지 및 보안관리
43. 사업장 기계·전기시설 수리 및 조작관리
44. 전기보안(안점점검)관리
45. 수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정수생산
46. 고압가스(액체염소)유지관리
47. 수질시험 자료 기록유지 관리
48. 실험실 운영 및 관리
49. 각 사업장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50. 기타 수질시험 검사

④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하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2. 하수도 특별회계 운용 관리 및 공기업 전환업무
3. 공공 하수도 점·사용 허가
4.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세외수입, 문서관리,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
7.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8.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9.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관리
10. 지하수 계측기 점검 및 설치교체 관리
1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12. 지하수개발(농업용 지하수 포함)이용허가 및 신고관리

제2절 시설관리사업단

제57조(단장) 시설관리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8조(하부조직) ① 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매립장관리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

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주차차량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업단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주차환경개선지구 종합계획 수립·시행
3.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 종합계획 수립·시행
4. 공영 주차장 운영 및 관리(다만, 개별 사업부서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해당 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5. 기계식 주차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과 보수업체 등록관리
6. 민영 노외주차장 신고통보 및 지도관리
7. 소규모(노상, 노외, 임시) 주차장 시설 및 관리
8.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에 의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
9. 주정차 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시행
10.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일방통행지정 협의
11.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
12. 불법주정차 단속(견인 포함) 및 현년도 과태료 부과·징수관리
13. 자전거 시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14. 정부 자전거 정책 대응 및 시책개발 추진
15.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업무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17.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
18. 차량등록 종합계획 수립・시행
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리
20.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등록
21.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
22.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
23. 자동차 등록번호 지정 및 관리
24.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및 지도감독
25. 자동차번호표 봉인 관리 및 수불관리
26.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원부 등본 발급・열람관리

27.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 등록관련) 과태료 현년도 부과・징수 관리
28. 자동차 검사 관리
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과태료 현년도 부과・징수 관리
30.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31. 무보험 운행차량 사범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
32. 건설기계(중기) 면허증 교부・등록・검사관리
33. 건설기계 책임보험 과태료 현년도 부과・징수 관리
34.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5. 이륜자동차 번호판 지정관리
36.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관리
37. 건설기계 신규・이전・변경등록, 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 등
38.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확인・지도 점검

③ 도로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도우회도로・국가지원지방도로・유료도로 관리
2. 국도(동 구간) 및 지방도 유지관리
3. 도시계획도로・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변의 법면・절개지 유지 관리
6. 도로관리심의회 운용관리
7. 접도구역 보호관리
8.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9. 공동구시설 유지관리
10. 도로(사도 포함) 사용・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11. 도로(비법정도로 포함) 국・공유재산 관리
12. 운행제한 차량단속 및 지도감독
13.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14. 사설표지판 설치 허가 및 신고, 지도단속
15. 도로의 통행제한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지도단속

16. 도로 점・사용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동지역)
17.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동지역)

④ 매립장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만흥·월내매립장 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만흥·월내매립장 반입 쓰레기 계량 및 통제관리
3. 만흥·월내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관리
4. 만흥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관리
5. 만흥매립장 매립가스(LFG) 발전시설 관리
6. 만흥·월내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7. 만흥·월내매립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8. 만흥·월내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등 실험실 운영관리
9. 월내매립장 운영

제5장 중부민원출장소

제59조(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0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중부민원출장소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 통제
2.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
3. FAX, 우편, 전자 민원처리 및 정산 업무
4.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발급
5. 민원사무 전용 공인관리
6. 여서청사 공무원 비상연락체계 유지·우편물 접수 배분
7. 가족관계등록 민원 및 제증명 사무
8. 국적취득 및 상실 신고 수리
9. 신원증명사항 회보
10. 수형인명부 및 후견등기사실 관리
11. 지적공부 등록현황 관리
12. 지적 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
13. 토지이동지 조사 및 공부정리

14.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15. 지적측량 검사 및 기준점 관리
16. 지적경계 정비사업 관리
17. 지적측량 장비관리
18. 지적공부 보존관리 및 반출승인
19. 지적도면 전산화 관리
20. 토지이동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징수관리
21.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관련사무
22. 지적공부 열람 및 제증명 발급관리
23. 토지등기필 통지서 관리
24. 토지소유권 변경 및 주소등록 관리
25. 법인 아닌 사단·재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리
26.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27.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28. 지적정보센터 운영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사무
30.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관리
3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업무 추진
32.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33. 부동산 실명제 운영관리
3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관리
35.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3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37. 건축물 대장 등 제증명 발급

제6장 읍・면・동

제61조(읍・면・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부읍・면장을 둔다.

② 부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한다.

제63조(분장사무) 읍·면·동의 분장 사무는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로 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환경복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문화산업국장, 교육복지국장, 수산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②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 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14조제1호의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⑤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복지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제1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⑥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여수시립도서관장"을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

⑦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시설관리사업단장”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주차계도업무담당”을 “주차지도업무담당”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진료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2조제2항 관련)

보건진료소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송도보건진료소	돌산읍 송도길 38-2	돌산읍 군내리(송도마을)
금성보건진료소	돌산읍 돌산로 617-2	돌산읍 금성리
율림보건진료소	돌산읍 향일암로 269-6	돌산읍 율림리
죽포보건진료소	돌산읍 돌산로 2080-8	돌산읍 죽포리, 서덕리, 둔전리
평사보건진료소	돌산읍 평사로 560-6	돌산읍 평사리
복산보건진료소	소라면 달천길 135	소라면 복산리
사곡보건진료소	소라면 상사길 21	소라면 사곡리
봉두보건진료소	소라면 당촌길 57-1	소라면 봉두리
상봉보건진료소	율촌면 상봉1길 28	율촌면 상봉·봉전·반월리
감도보건진료소	화양면 감도길 2	화양면 이천리
장수보건진료소	화양면 장수자매길 8-2	화양면 장수리
세포보건진료소	화양면 장수로 19	화양면 안포리
유송보건진료소	남면 솔고지길 71-11	남 면 유송리
안도보건진료소	남면 안도해변길 49-7	남 면 안도리
화태보건진료소	남면 화태길 28	남 면 화태리
두라보건진료소	남면 대두길 89	남 면 두라리
횡간보건진료소	남면 횡간중앙길 14-2	남 면 횡간리
월호보건진료소	화정면 월호골길 13	화정면 월호리
제도보건진료소	화정면 제도해안길 63	화정면 제도리
상하화보건진료소	화정면 아랫꽃섬1길 4-5	화정면 상화리, 하화리
낭도보건진료소	화정면 여산길 62	화정면 낭도리
적금보건진료소	화정면 적금뒷등길 27	화정면 적금리
여자보건진료소	화정면 마파지길 17	화정면 여자리
서도보건진료소	삼산면 장촌3길 9-6	삼산면 서도리
동도보건진료소	삼산면 죽촌1길 24-1	삼산면 동도리
손죽보건진료소	삼산면 우데미길 12	삼산면 손죽리
경호보건진료소	대경도2길 5(경호동)	경호동
묘도보건진료소	묘도10길 6(묘도동)	묘도동

[별표 2]

농업인상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4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돌산읍 농업인상담소	돌산읍 죽포출장소 2층	돌산읍, 남면 일원
소라면 농업인상담소	소라면사무소 2층	소라면 일원
율촌면 농업인상담소	율촌면사무소 2층	율촌면 일원
화양면 농업인상담소	화양면사무소 2층	화양면, 화정면 일원
중부 농업인상담소	여성회관 내(별관)	광림·월호·여서·문수·미평·둔덕·만덕, 기타 동 일원
서부 농업인상담소	주삼동주민센터 2층	삼산면, 쌍봉·시전·여천·주삼·삼일·묘도동 일원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제61조 관련)

읍·면·동	직 위	직 급
돌산읍	돌산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소라면	소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율촌면	율촌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화양면	화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남 면	남 면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화정면	화정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삼산면	삼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동문동	동문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한려동	한려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중앙동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충무동	충무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광림동	광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서강동	서강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대교동	대교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국 동	국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월호동	월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여서동	여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문수동	문수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미평동	미평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둔덕동	둔덕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만덕동	만덕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쌍봉동	쌍봉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시전동	시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여천동	여천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주삼동	주삼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삼일동	삼일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묘도동	묘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별표 4]

읍·면·동장 사무(제63조 관련)

구분	분 장 사 무
읍·면	○ 일반행정 - 주민자치센터 운영,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 - 선거 및 투표, 주민만남의 날 운영, 적십자회비 모금 등 - 공한지 꽃밭 조성, 도로변 제초 등 ○ 세무, 관재 - 지방세 변동자료 관리 및 고지서 전달 - 지방세 체납세금 독촉 및 징수, 건축물 실측 현지조사 등 ○ 민원 -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각종 증명발급 등 ○ 재난관리, 민방위 - 재해이재민 발생보고, 재해(수해)피해조사 - 민방위, 인력동원, 자격면허관리 등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 국민기초, 차상위 계층,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청소년 복지에 대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 자활사업, 의료급여, 보육업무에 대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등 - 영구 임대주택 입주신청 접수 ○ 청소 - 불법투기·불법소각 방지 지도, 쓰레기 종량제 계도 -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대형 폐기물 처리신청 - 국토 대청결 운동 등 ○ 농정, 축산, 산림 - 농지대장 작성·관리, 농지위원회 운영 -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 및 농지전용 신고, 자격증명 발급 - 농어업 재해발생 조사 및 신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 작물재배 및 수확량 조사, 농기계 수량 조사 등 - 가축 사육사실 확인, 사료작물 재배현황조사,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 등 - 산불 예방 및 진화, 임산물 생산량 조사 등 ○ 건설, 도시, 건축, 수도, 차량 - 노상 적치물 단속, 양수기 보관관리, 제설작업 -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 건축 철거 멸실 사실 확인 및 건축물 일제조사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배부 ○ 기타 - 관할구역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복무 상황 확인

구분	분 장 사 무
동	○ 일반행정 – 주민자치센터 운영,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 – 선거 및 투표, 주민만남의 날 운영, 적십자회비 모금 등 – 공한지 꽃밭 조성 등 ○ 민원 – 주민등록, 인감, 각종 증명발급 등 ○ 재난관리, 민방위 – 재해이재민 발생보고 – 민방위, 인력동원, 자격면허 관리 등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 국민기초, 차상위 계층,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청소년 복지에 대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 자활사업, 의료급여, 보육업무에 대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등 – 영구 임대주택 입주신청 접수 ○ 청소 – 대형 폐기물 처리신청, 국토 대청결 운동 등 ○ 농지 – 농지대장 작성・관리 ○ 건설, 도시, 수도, 차량 –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배부 ○ 기타 – 관할구역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복무 상황 확인

제13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동 인

여수시 규칙 제806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06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정기명 인

여수시 규칙 제807호

붙임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07호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 등)”을 “(수당 및 여비)”으로 하고 같은조 제목외 부분 중 “수당·여비 등을” 을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를” 로 한다.

〔별표 1〕 제목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관련하여 구분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분야 “공사”와 공사의 “평가항목(예시)”전부 삭제한다.

〔별표 2〕 제목 “수당 및 여비 등” 을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로 하고 “수당”란을 “참석수당”으로 변경하고 금액은 종전 “수당”과 같으며 “여비”란에 신설된 “심사수당”으로 기재하고 금액은 “100,000원/시간(최초 1시간)”으로 “비고”란에 “초과 매시간 50,000원 추가 지급” 기재하고 “교통비” 칸을 삭제하여 “여비”로 기재하고, “금액”과 “비고”는 종전 여비와 같다.

구 분		금 액(원)	비 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회	
	심사수당	100,000원/시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50,000원 추가 지급
	여 비	민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공무원 여비규정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및 여비)----------참석수당 · 심사수당 및 여비를----------

〔별표1〕

현 행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기타 필요한 사항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가분야	용역·물품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기타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공사	■ 정책 이해도 ■ 마스터플랜 반영도 ■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 설계 우수성·창의성 ■ 기타 필요한 사항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퍼센트 상당가격)]+[2×(추정가격의 80퍼센트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퍼센트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퍼센트 상당가격)]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주[2])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3])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06.12.26)에 따라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퍼센트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아래 산식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추정)가격의 87.7퍼센트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개 정 안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신인도 ■ 기타 필요한 사항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가분야	용역·물품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기타 필요한 사항	6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퍼센트 상당가격)]+[2×(추정가격의 80퍼센트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퍼센트 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퍼센트 상당가격)]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주[2])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3])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06.12.26)에 따라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퍼센트 이상이 되게 해야 하므로 아래 산식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추정)가격의 87.7퍼센트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수 당	100,000원/회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공무원 여비규정
	교통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참석수당 · 심사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회	
	심사수당	100,000원/시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50,000원 추가 지급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공무원 여비규정